



“남을위한 양보운전 나를위한 안전운전”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수 신 전 회원사

(경유)

제 목 2026년도 경상북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2026년도 경상북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일정을 알려온 바, 이에 이첩안내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일정만 발표되었으며 하반기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붙 임 : 1. 2026년도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안내자료 1부 끝.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담당자 이태훈 대 리 이태훈 전무이사 장재하

협조자

시행 경화 - 106 (2026. 2. 26.) 접수

우 41251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86-3, 5층 (신천동, 경화빌딩) 경북화물협회 / <http://www.bigta.or.kr>

전화번호 053-751-8992 팩스번호 053-741-3251 / 이메일 gbkta@naver.com

1 2026년도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안내자료

가. 법적 근거 및 개요

- 교통안전교육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교육과정 개요

구분	대상		여객 운수종사자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 방법
			주기	시간	주기	시간	
신규 교육	새로 채용한 여객 운수종사자		-	16	-	-	대면 교육
보수 교육	무사고 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면제	-	면제	-	면제
		5년~10년	격년	4	매년	4	온라인 교육
		5년 미만	매년	4	매년	4	대면 교육
	택시운송사업 모범운전자	5년 미만	격년	4	-	-	대면 교육
	법령위반자 (강화교육)		수시	8	수시	8	대면 교육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	-	매년	8	안내자료 p.3 '라. 강화교육' 참고

나. 보수교육(4시간)

- 2026년 보수교육 대상 기준
 - 교육 면제자를 제외한, 2024. 11. 1.부터 2025. 10. 31.까지 사업용 자동차 운전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 및 입사 미보고자(경력 산출 불가능)
- 2026년 보수교육 면제 기준

여객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u>확정</u> 보수교육 이수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경북교통문화연수원 <u>확정</u> 보수교육 이수자 ※ ‘<u>확정</u>’의 의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 이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타 시도 교통문화연수원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가능)
화물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법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해에 화물 업종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 ✓ 「<u>위험물안전관리법</u>」 제28조 제1항에 따른 <u>안전교육</u>을 이수한 해에 화물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 무사고, 무벌점 기준일: 2025. 10. 31.

① 무사고, 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 무사고, 무벌점 기간: 무사고, 무벌점으로 유지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②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다. 여객 신규교육(16시간)

- 여객(버스, 택시) 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8조에 의거 신규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16시간)
-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4시간)은 면제

라. 강화교육(8시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화물 업종 보수교육 면제 기준 동일 적용)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6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차량번호' 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신설 2020. 12. 29.>

•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육 방법 중 택 1

- ① 강화교육(8시간) 1회 수강
- ② 현장 보수교육(4시간) 1회+위험물질 온라인 보수교육(4시간) 1회
- ③ 현장 보수교육(4시간) 2회

※ 경북 소속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에 관계 없이 위험물질 온라인 보수교육(4시간) 1회 수강 가능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특별검사 대상자
 - 준수사항 위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개정 2022.1.28.>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 준수사항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화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처분 기간: 2024. 11. 1.~2025. 10. 31.)

- 특별검사 대상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기준으로 확인)
 - 2024. 11. 1.~2025. 10. 31.까지 특별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자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마. 기타 안내 사항

- 교육면제 여부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www.gbtt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객 신규교육(16시간) 및 강화교육(8시간)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교육 참석 전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관련 문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팀(054-472-4743)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길수록 온라인교육 또는 교육면제를 통해 성과를 인정받고,
 교통안전 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 교육제도 운영
 (현장교육 → 온라인교육 → 교육면제)

□ 2026년도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 일정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www.gbtti.or.kr)를 통해 교육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가능 일시부터 교육 날짜 하루 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정원 초과시 접수 불가)

교육 날짜	교육 장소	정원(명)	예약 가능 일시
3/15(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3/3(화) 10:00부터
3/20(금)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3/25(수)	울릉군민회관	100	
3/26(목)	울릉군민회관	100	
4/2(목)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4/4(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4/12(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4/14(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4/16(목)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4/19(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4/28(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4/30(목)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5/10(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4/6(월) 10:00부터
5/12(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5/17(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5/19(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5/27(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5/31(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6/8(월)	안동수산물도매시장 2층 대강당	200	5/4(월) 10:00부터
6/9(화)	안동수산물도매시장 2층 대강당	200	
6/10(수)	안동수산물도매시장 2층 대강당	200	
6/11(목)	안동수산물도매시장 2층 대강당	200	
6/12(금)	안동수산물도매시장 2층 대강당	200	
6/18(목)	상주문화회관	200	
6/19(금)	상주문화회관	200	
6/29(월)	영주시민회관	200	
6/30(화)	영주시민회관	200	

교육 예약자 참석 확인 시간	보수교육 진행 시간
08:00~08:30	08:30~12:30

※ 교육장소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약자분들에게 정확히 안내를 드리기 위함이니, 꼭 예약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6년도 화물 운수종사자 강화교육(8시간) 일정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www.gbtti.or.kr)를 통해 교육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가능 일시부터 교육 날짜 하루 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정원 초과시 접수 불가)

교육 날짜	교육 장소	정원(명)	예약 가능 일시
3/22(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3/3(화) 10:00부터
6/5(금)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88	5/4(월) 10:00부터

교육 예약자 참석 확인 시간	강화교육 진행 시간
08:00~08:30	08:30~17:00

※ 교육장소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약자분들에게 정확히 안내를 드리기 위함이니, 꼭 예약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6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8시간) 이수 기준

- 교통안전교육을 총 8시간 이수해주시길 바랍니다.(1~3안 중 선택)
 - <1안> 강화교육(8시간) 1회 수강
 - <2안> 현장 보수교육(4시간) 1회+위험물질 온라인 보수교육(4시간) 1회
 - <3안> 현장 보수교육(4시간) 2회

※ 경북 소속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에 관계 없이 위험물질 온라인 보수교육(4시간) 1회 수강 가능

- 관련 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신설 2020. 12. 29.>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 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